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개인정보 유출사업자 제재 강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		
② 추진배경	○ 개인정보 활용하는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,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효과나 시정조치를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 필요		
③ 사업개요	○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업의 책임성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는 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○ 연락두절 등으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지연 및 개인정보 무단수집 해외사업자에 대한 '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' 도입으로 규제 집행력 강화 필요		
④ 사업부서	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	⑤ 담당자	양기철 과장 김영일 사무관
⑥ 선정기준	법령 제·개정	⑦ 사업기간	'18년 ~ 계속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「정보통신망법」 상 '과징금 상향 및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' 의원발의('18.2.14. 변재일 의원, '18.2.28. 고용진 의원)		'18.02.14. 김재영 국장 천지현 과장 황선철 사무관	